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21. 2.



서민우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서민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3조제1항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4조 정관, 안 제11조 사업연도, 안 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 끝으로, 안 제13조 결산서의 제출, 안 제14조 보고·검사 및 감사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1021
----------	----------

발의일자: 2021. 2. 24.

발 의 자: 서민우, 박정환, 안영란
김귀화, 박왕규

1. 개정이유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안 제3조제1항)
- 나. 정관 신설(안 제4조)
- 다. 사업연도 신설(안 제11조)
- 라.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신설(안 제12조)
- 마. 결산서의 제출 신설(안 제13조)
- 바. 보고·검사 및 감사 신설(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저소득”을 “청소년, 저소득”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p> <p>1. 우수학생 및 <u>저소득</u> 자녀 장학금 지급</p> <p>2.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사업) ----- -----.</p> <p>1. ----- <u>청소년, 저소득</u>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p> <p>1. <u>목적과 명칭</u></p> <p>2. <u>사무소 소재지</u></p> <p>3. <u>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u></p> <p>4. <u>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u></p> <p>5. <u>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u></p> <p>6. <u>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p> <p>7. <u>해산에 관한 사항</u></p> <p>8. <u>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u></p> <p>② <u>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③ <u>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없이 달서구의회(이하</u></p>

제4조 ~ 제8조 (생략)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 ①구청

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 제9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
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신 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사
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
계감사를 받아 매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
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